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21 - 16
----------	-----------

제출일자 : 2021.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나. 사업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5대

다. 위탁대상 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5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차량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8년도 : 3,045명(1일 평균 운행횟수 9.6)
- 2019년도 : 2,8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20년도 : 3,446명(1일 평균 운행횟수 9.4)

마.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위탁기간 : 3년간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 화, 토 : 8시~23시
- 수, 목, 금 : 7시~23시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다. 향후일정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232,700천원(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
-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행 중인 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임

□ 위탁운영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6항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 위탁 개요

- 위탁업체 : 공개모집 / 위탁차량 : 5대
- 위탁기간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 화, 토 : 8시~23시
 - 수, 목, 금 : 7시~23시
- ※ 추후 차량 추가 구입 및 수요 증가 등 필요에 따라 확대 운행 가능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

□ 그간의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3년간(2019.1.1 ~ 2021.12.31.)

□ 운영방법

구분	방 법	세부내용	비 고
운영 방법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운영 대수	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법정대수 9대
운영 시기	계약일로부터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 1 ~ 2024. 12. 31 	
운행 시간	연중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공휴일 휴무 · 일, 월 : 07시~22시 · 화, 토 : 08시~23시 · 수, 목, 금 : 07시~23시 ※ 운영대수 또는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운행 구역	경상남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편도 운행) 	
이용 대상	교통약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② 65세 이상의 노약자 ③ 임산부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⑤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①~④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이용 요금	위원회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관내 : 2,000원(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 · 관외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 · 유료도로 통행료 : 지자체 지원 	
이용 방법	즉시콜 사전예약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신청 : 거창군청 3층 경제교통과 또는 각 읍·면에서 회원신청 가능 · 회원 신청 후 승인된 분들에 한하여 콜센터 연락하여 이용가능 · <u>이용예약: 경남도 콜센터(1566-4488)</u> · 이용 시 지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관내 : 없음 - 대구 : <u>‘경상남도 내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u> ※ 예약은 이용 전날 오후 9시 이후로, 이용하는 날 운행차량 20%까지만 예약이 가능함. ※ 2021. 1. 1.부터 회원제 시행, 승인기간 만료 전 미갱신시 이용불가 ※ <u>거창군 운영 차량 5대로 상시배차 불가 시</u> <u>타교통수단 이용 홍보</u> 	

□ 위탁업체 지원 및 선정방법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차량 및 운영비

차종	차명	차량번호	연식	비고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 운영비 : 232,700천원

▶ 차량 1대당 46,540천원(운전원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향후계획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 기대효과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용대상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19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④ 삭제 <2012. 11. 3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